

[별지 제70호서식] <개정 2025. 2. 18.>

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					
제 작 자	제작자명			제작자등록번호	
	주 소			전 화 번 호	
차 명			형 식	원 동 기 형 식	
변경전차종 제원관리번호			최초자동차 제 작 자		
			차대번호군 (1~8째자리)		
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(※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)		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.	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년 월 일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-top: 5px;"> 제작자 (서명 또는 인) </div>					
구비서류 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 기시행통보서 각 1부 2.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1부 3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 증서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) 또는 별지 제26호의13 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1부					
신고안내					
신고하는 곳	성능시험대행자			처 리 기 간	1 0 일
수 수 료	없음				

210mm×297mm
(일반용지 60g/m²)